

RISE 부산공유대학본부 운영 지침

제정 2023. 11. 24.

개정 2024. 1. 12.

개정 2024. 6. 28.

개정 2025. 7. 17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부산공유대학 학사 운영 지침」 제6조에 의하여 부산공유대학(이하 “공유대학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부산공유대학본부(이하 “본부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공유대학 사업 계획 수립·추진 총괄
2. 참여대학 교육체계 분석 및 교육혁신 프로그램 개발
3. 공유대학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
4. 공유대학 융합전공 및 교육과정 운영
5. 대학교육혁신 추진 점검·관리 및 성과평가
6. 본부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·운영
7. 본부 예산편성·집행·결산
8. 그 밖에 대학교육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지침은 본부의 조직, 인사, 운영 등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부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른다.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4조(본부장 등) ① 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분부장을 두며, 본부장은 주관대학 총장이 임명하고, 부분부장은 본부장의 추천으로 주관대학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본부장은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분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, 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분부장이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조직 및 전담인력) ① 본부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본부 행정실을 설치하고 행정실장을 두며, 부산대학교 주관 전공 운영을 위하여 미래모빌리티전공을 설치하고 전공주임을 둔다.

- ② 공유대학 업무를 위하여 본부 행정실 산하 교육혁신 기획·운영팀을 두며, 아래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
1. 본부 사업기획 및 공유대학 발전계획 수립
 2. 융합전공, 교양, 비교과 등 교육과정 개발 및 전공 신설·운영 총괄
 3. 교육혁신 정책 기획 및 대학별 추진현황·성과지표 관리
 4. 학사 운영 관리 및 학적·수강·성적 등 행정업무 수행
 5. 교육성과 수집·분석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
 6. 온라인 플랫폼 구축·운영 및 본부 주관 강좌 콘텐츠 개발·관리
 7. 예산편성·집행 및 회계·서무·기자재·공간 등 행정관리
 8. 공유대학 홍보 및 학생 모집
 9. 본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
 10.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수행
- ③ 미래모빌리티전공은 별도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.
- ④ 각 팀별 전담인력으로 팀장, 연구인력(계약교수, 연구원 등), 사무원 등을 두고 인력 채용·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.

제6조(위원회 구성 및 기능) ① 사업 추진 과정 점검과 성과 관리를 위하여 공유대학에는 지산학총괄협의회를, 본부 산하에는 교육위원회, 운영위원회, 대학협력위원회를 둔다. 이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「RISE 부산공유대학 위원회 운영 지침」에 따른다.

- ② 지산학총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1. 공유대학 운영 관련 행정지원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
 2. 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의사결정 조정
 3. 당연직 위원 및 부산광역시·부산라이즈혁신원·지역혁신기관 간 협력 사항
- ③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공유대학 교육과정 신설 및 주요 변경사항
 2.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신설 계획
 3. 교육성과 분석 결과에 대한 환류 및 질 개선 방향
 4. 그 밖에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·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-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본부 사업의 기획 및 주요 운영 계획
 2. 본부 규정 및 지침의 제·개정
 3. 학생 선발·지원·관리 등 운영방향
 4. 복수전공, 부전공, 마이크로디그리 등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
 5. 수요자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환류 방안
 6. 그 밖에 본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- ⑤ 대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공유대학본부, 중심대학, 참여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
 2. 대학 간 운영 현안 및 과제 해결 방안 논의
 3. 대학별 책임자 및 운영위원 참여를 통한 실무 협의
- ⑥ 지산학총괄협의회 및 대학협력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개최하되,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⑦ 교육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안전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3장 사업비 관리 (삭제 2025.07.17)

제7조 (삭제 2025.07.17)

제8조 (삭제 2025.07.17)

제4장 보칙

제9조(지침 개정) 이 지침 제정 후 개정이 필요할 경우 본부 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따로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칙 (2023.11.24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4.1.12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4.6.28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5.7.17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